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김진철 의원 외 18명
- 의안번호 : 제2099호
- 제 안 일 : 2017년 9월 8일
- 회부일자 : 2017년 9월 19일

### 2. 제 안 이 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을 법인·단체에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그 운영비 등을 지원받던 자연보호 관련단체의 재정 여건 악화와 이로 인한 자연보호활동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 3. 주 요 내 용

- 가. 민간자연환경보호단체에 대해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김 선 희)

###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 할 수 없으므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관련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상위법령 검토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어있음.
-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해석에 따르면(2014년 9월 16일)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운영비’는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해당됨.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보호 관련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2016.1.27 개정).

- 따라서 본 조례에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의 단순한 확인이나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자치법규는 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재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치법규에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3-0288)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016, 법제처 9쪽

## [참고]

### ◎ 보조금 지급 기관 현황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민간기관은 제54조의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와 제55조의2에 생태관광협회가 있으며, 이 두 민간단체에게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에 의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나 민간단체는 없음. 다만 야생생물서식지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 등에 자연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게는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 ◎ 조례의 적용과 향후 관리

- 동 조례에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경우, 조례를 악용하여 민간단체들이 무분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따라서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지원을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보조금 관련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단체가 진행하는 활동에 행사운영비를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 또한 민간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23조에 보조금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보조금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4. 5. 28]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27.>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 각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